

시설공사 및 계약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 또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기타 단가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계약이라 함은 본교에서 행하는 각종 시설공사 또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기타 단가 계약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조 (담당부서) 본교에서 행하는 공사 업무는 총무처 관리계가 담당한다.

제5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방법) 각종 시설공사 또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기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단,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제7조 (공사금액) 시설물 및 기자재 유지보수료 1,000만원(부가세포함) 이하의 것은 총무처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7.24., 2017.11.4.>

제8조 (수급관리계획) ① 총무처 관리계에서는 기획처의 예산이 확정된 공사에 대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개·보수를 한다.

② 삭제<2007. 7. 24>

제9조 (대금지급) ① 선금급(20%) 지급 :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20% 선금급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착공서류 제출확인 후 선금급으로 계약 총 금액의 20%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 7. 24]

② 잔금(80%) 지급 : 공사를 완료하고(감독원의 검사 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과 준공서류 제출 확인 후 잔금을 20일 이내에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7. 24>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성금을 잔금 내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 7. 24]

제10조 (입찰공고) 입찰공고는 교단지 게재, 학교홈페이지 및 전문공사입찰홈페이지 의뢰, 인터넷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7.24., 2017.11.4.>

제11조 (입찰공고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입찰의 경우는 현장설명의 장소, 일시, 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5. 공사예정가 및 낙찰방법[신설 2007. 7. 24]
6.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8.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경쟁입찰) 공사에정가격이 5,000만원(부가세포함)을 초과하는 시설공사는 경쟁 입찰에 의한다. <개정 2007. 7. 24>

제13조 (응찰서류) 입찰참가자에게 현장설명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서, 입찰산출내역서, 실적증명서, 자격증사본, 입찰금액의 5%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4>

제14조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입찰은 총무처장, 총무과장, 공사요청 부처과장(계장 또는 주임) 입회하여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100분의 85-100이내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1회 입찰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2회까지 실시하며, 그때까지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저가격 입찰자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최저가격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시 신규업체 견적을 받아 수의 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7.11.4.>

제15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각종 조합법에 의한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및 보증증권
4.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6조 (입찰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입찰을 시행한 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로 판명될 때
2.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에 입찰자가 참가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공고나 입찰유의사항을 위반한 자의 입찰
5. 입찰참가자 중 단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7조 (계약서 작성) 각종 시설공사 또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기타 단가 계약은 계약서의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실질 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사 및 기타 계약에 있어서 특수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5.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서, 각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납부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상기 제15조 제2항에 정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 (감독 및 검사) 공사 감독자(기안자) 및 공사 검사자(기안자)는 감독·검사의 결

과 및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상이할 경우,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제20조 (계약해지)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금액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 (하자보수 및 보증금) ① 시설공사 또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기타 단가계약은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험회사, 금융기관,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③ 하자보수보증기간은 공사 및 기타 계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할 수 있으며 1년 2회 하자검사서를 작성보고한다. <개정 2007. 7. 24>

제22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특별한 사유없이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1일에 대하여 제2항에 정한율의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체보상금율은 공사계약 총금액(기성부분 검사를 거쳐 지불된 금액제외)의 공사(100일 이상은 계약해지)의 경우는 1000분의 1, 물품의 제조·구매(67일 이상은 계약해지)의 경우는 1000분의 1.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40일 이상은 계약해지)의 경우는 10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07. 7. 24>

③ 지체상금의 상한금액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한다.

제23조 (수의계약)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에 부칠 이유가 없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3.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5.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의 경우
6.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에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7. 특정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8. 동·식물이나 조경수목, 조경석 등 생산자와 직접 구매하는 경우
9. 공사 및 기타 계약에 있어서 특수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10.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4조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기타 단가계약)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

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료 및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 (견적서 제출요구) ①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단,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과 10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미비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통칙, 고시 등을 준용한다.

제27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개정 2011. 1. 28.>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